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법에 따른 절차 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가사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판장 등이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등을 촉탁하는 것과 촉탁받은 가정법원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나 재산관리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근거

를 둠(안 제49조의2 신설)

- 부채자의 재산관리인이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 입양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사나 심리검사전문가에 의한 심리 검사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
-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9 신설)
-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120조의3 및 제120조의7)
- 미성년자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121조)

4.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①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제2항의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증거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 중 “실종선고가 있는 때”를 “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입양허가의 절차 등”을 “심리검사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제62조의8제2항 중 “제62조제1항 각 호”를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5조의3제2항 중 “법 제67조의2”를 “법 제67조의3”으로 한다.

제95조의8 중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을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및 제120조의7제1항 중 “양육비채무자”를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다.

제120조의4제1호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다.

제120조의8제1호 및 제120조의10제1호의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을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의무

② 제1항의 이행명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증거조사 등)

① (생략)

② 가정법원은 사실조사 또는 증거 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 받은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50조(처분의 취소)

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증거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처분의 취소)

----- 실종선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2조(입양허가의 절차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2. 양부모가 될 사람
3.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4.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5.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6.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7.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

청장에게 그 소득, 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입양의 동기 및 그 밖의 사정에 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 또는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의 조사 촉탁,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8(준용규정)

① (생략)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62조의8(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 조 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 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생략)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 4. (생략)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 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
----- 미성
년자인 자녀-----
-----.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

1.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

2. ~ 4.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

다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 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 4. (생략)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 4. (생략)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 미성년자인 자녀

-----.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

1.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
2. ~ 4.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

1.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
2. ~ 4. (현행과 같음)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의무

② 제1항의 이행명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